

# 증권투자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

## 1. 투자자 정보 확인은 본인이 정확히 기재합니다.

>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 투자자 정보 확인사항에 본인의 투자목적, 재산상황, 투자경험, 위험성향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 투자자 정보확인서 상 본인의 서명, 날인은 본인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문제발생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곤란해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2.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핀 후 투자합니다.

>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성, 수수료, 계약해제 및 해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듣고, 의문사항은 충분히 이해한 후 이에 대한 확인 서명을 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
## 3. 손실보장 약정은 불법 투자권유행위입니다.

>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특정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, 손실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는 부당한 투자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. 일정 수익률보장약정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.

## 4.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, 잘못된 부분은 즉시 이의제기합니다.

> 잘못된 거래내역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해당 증권·선물회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. 문제의 해결은 관련 직원과 개인적으로 하기 보다는 해당 기관의 공식적 민원해결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## 5. 투자의 판단과 책임주체는 투자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.

> 전문가라고 해도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, 타인의 판단에 의존하여 거래를 하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전부를 타인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없습니다.



※ 증권·선물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(전국 어디서나 1577-2172, <http://drc.krx.co.kr>)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 분쟁발생시 투자자 대처방법 안내

## ◇ 이의제기 및 분쟁사실 통보

- > 직원의 위법행위나 주문미집행, 전산장애 등의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관련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뒤, 해당 증권·선물회사의 민원담당부서 (준법감시팀 또는 소비자보호팀 등)에 분쟁사실을 통보하여 분쟁의 해결을 요청합니다.

## ◇ 분쟁해결수단

- >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, 분쟁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등 다액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.
- > 이러한 소송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분쟁해결수단으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

## ◇ 분쟁조정제도의 장점

- > 전문성·객관성·공정성을 갖는 제3자(조정인)가 분쟁의 원인이 된 상호쟁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.
- > 또한, 비용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정은 소송보다 당사자 간에 덜 대립적입니다.
- > 따라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
※ 증권·선물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(전국 어디서나 1577-2172, <http://drc.krx.co.kr>)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